



정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최 원 선임연구원

■ 정부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권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 대비 5.7% 증가한 455조 9,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9% 증가한 402조 3,000억 원을 기록함.
- 따라서 정부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단,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하는 한편,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상호금융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대율 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 감독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와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대출심사 관행 개선,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을 제시함.

-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2011년 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 평균을 초과한 조합 및 금고는 2011년 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감독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며, 고위험 대출을 과도하게 보유한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검사도 강화함.
- 단위 농·수협·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총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조합원 간주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제외하는 등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함.
-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함.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유예기간(2013년 6월 말까지) 중에도 강화된 수준까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함.
- 정부는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하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로 함.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 행위 및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하고,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함.
 - 미소금융의 경우 채신방안을 마련하여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 취급과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여건을 개선하며,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간 공급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함.
 - 고금리 전환대출인 바퀴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 기능을 활성화하며,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할자금 지원을 확대함.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로 지원함.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등, 2/27)